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서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방부 문민화 추진에 따라 현역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국장급 직위 중에는 계엄사령부 처장을 겸직하는 직위가 있으나, 계엄사령부 직제상 각 처의 장은 현역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어, 공무원도 계엄사령부 처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 개정이 필요

3. 주요내용

해당분야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도 계엄사령부 처장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제4조 제2항 “현역장교 중에서”를 “현역장교 또는 공무원 중에서”로 수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 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계엄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2항 중 “현역장교 중에서”를 “현역장교 또는 공무원 중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처 및 실의 구성) ② 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되, <u>현역장교 중에서</u>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.	제4조(처 및 실의 구성) ② 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되, <u>현역장교 또는 공무원 중에서</u>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-6579